

정보통신 적합 인증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조사팀 활동결과

김 영 태

ETRI 표준체계연구실 선임연구원
TTA 시험인증제도실무작업반 위원

최 인 환

TTA 기획조정실 기획1부장

요 약

지난 2월 한국통신기술협회는 정보통신표준관련 각 기관(ETRI, KT, NCA, DACOM)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팀 운영으로, 전기통신표준화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1994-97호)에 의해 국내의 전기통신표준 적합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기통신표준 적합인증 세부운영규정(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본고는 이 세부운영규정(안)을 작성하기까지의 특별조사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 결과를 소개한 것입니다.

I. 배경

지난 1994년 12월 29일 정보통신부는 고시 제 1994-97호에서 "합리적인 전기통신표준의 제정·보급 및 활용을 통하여 전기통신의 원활한 운영과 전파의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능력의 증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표준화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전기통신표준화에 대한 최종적인 효과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통신표준의 적합인증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인증업무를 한국통신기술협회

사무총장에게 위탁(전기통신표준화 지침의 제55조)하고 있으며, 협회의 사무총장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인증기관으로서의 세부지침(전기통신표준화 지침의 제57조)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증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기술협회는 인증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각 기관의 전문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96년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정보통신표준 관련 각 기관(ETRI, KT, NCA, DACOM)의 실무전문가를 추천받아, 1996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정보통신 적합인증 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조사팀(이하, 특별조사팀이라 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전기통신표준 적합

인증 세부운영규정(안)(가칭)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고는 이와 같은 세부운영규정(안) 작성을 위한 특별조사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II. 특별조사팀의 구성·운영

1. 특별조사팀의 구성

한국통신기술협회의 지원하에 운영된 특별조사팀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실무부서를 포함한 5개 기관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 조사팀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 표준체계연구실의 김영태 선임연구원, 간사는 한국통신 연구개발원 표준연구단 프로토콜시험기술팀의 양동지 전임연구원, 위원으로는 한국전산원 표준본부의 김영균 주임연구원 및 데이콤 기술기획팀의 노갑신 대리, 그리고 실무부서로써 본 특별조사팀의 운영

지원을 위한 한국통신기술협회 기획조정실의 최인환 기획 1부장 등이 선임되어 본 업무에 참여했다.

2. 특별조사팀의 임무(역할)

본 특별조사팀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개 부분에 대한 연구 활동을 주로 하였다.

- ① 정보통신적합인증사업 수행을 위한 적합인증제도 수립
 - 정보통신표준 적합인증 세부지침(안) 작성
 - 적합인증 관련 기존 연구결과 종합 분석
 - 각 기관별 업무구분 조사분석(정보통신부, 한국통신기술협회, 시험기관, 신청자 등의 각각의 역할)
 - 일본의 인증제도 조사분석 등
- ②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침(안)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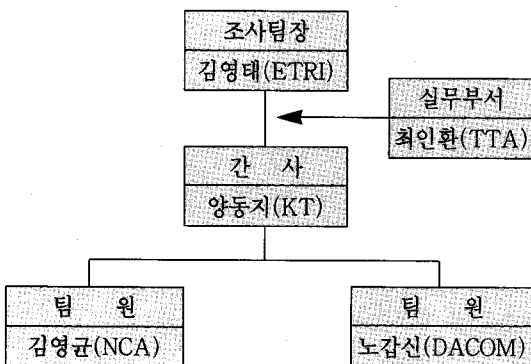
III. 특별조사팀의 활동 결과

1. 전기통신표준 적합인증 세부운영규정(안) 작성

본 특별조사팀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로써, 한국통신기술협회가 전기통신표준 분야의 적합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근간이 되는 가칭 “전기통신표준 적합인증 세부운영규정(안)”(이하, 세부운영규정(안)이라 함)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총 4개의 장(28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가. 적합인증 업무를 위한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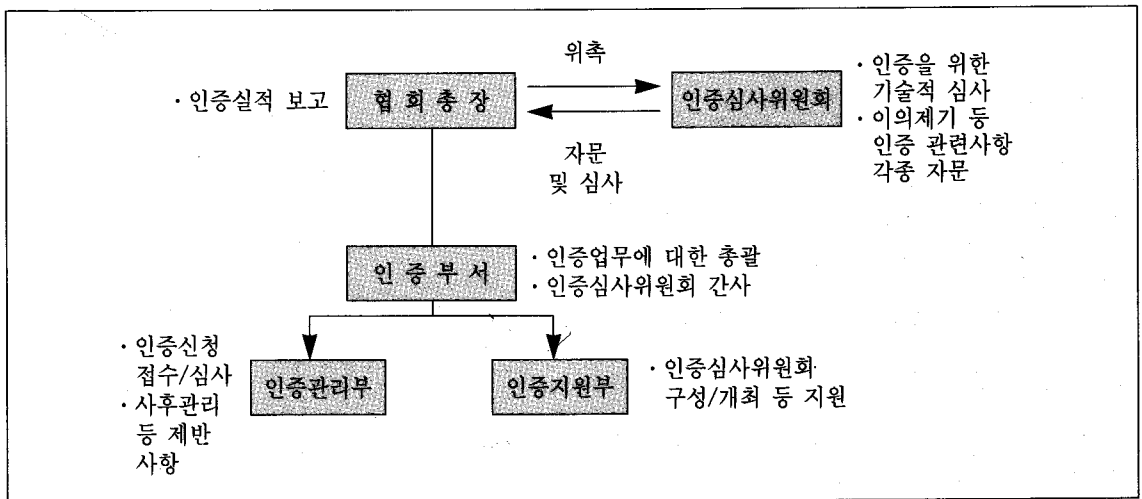
적합인증 업무에 대한 주요 조직 구성 및 그 역할은 (그림 2)와 같으며, 세부적으로 협회총장이 적합인증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짐에 따라, 협회총장은 적합인증 업무를 위해 정부부



[그림 1] 특별조사팀의 구성

<표 1> 세부운영규정(안)의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인증심사위원회 및 인증부서	제3장 적합인증절차	제4장 보칙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1절 인증심사위원회 제3조(인증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임무)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의장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8조(위원회의 개최) 제9조(회의의 의결) 제2절 인증부서 제10조(인증부서의 설치) 제11조(인증부서의 임무) 제12조(인증부서의 구성)	제13조(인증의 신청 및 수수료) - 별지 제1호 서식(인증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품질보증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사후봉사계획서) - 별표1(인증수수료) 제14조(인증심사) 제15조(인증서 교부 등) - 별지 제4호 서식(인증서) - 별표2(인증표시) - 별표3(인증번호 부여체계) 제16조(이의제기 및 처리) -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서) 제17조(인증서 취소) - 별지 제6호 서식(인증서 취소) 제18조(변경신고 및 처리) - 별지 제7호 서식(변경신고서) 제19조(인증서 재교부) 제20조(유효기간 등)	제21조(보고사항) 제22조(사후관리) - 별지 제8호 서식(조사요원증) 제23조(위원회의 준수사항) 제24조(국제적 상호인정) 제25조(수당) 제26조(위원회의 추천 등) - 별지 제9호 서식(위원(추천, 변경, 탈퇴)서) - 별지 제10호 서식(위촉장) 제27조(우선구매 권고)	시 행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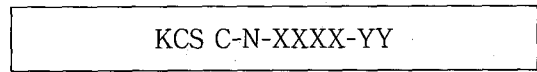
(그림 2) 적합인증업무를 위한 조직도

처의 정책담당자, 관련 업계 및 학계, 표준화 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인증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협회내의 인증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협회총장은 인증부서 산하의 인증관리부와 인증지원부를 별도로 두지 않고 그 기능을 인증부서에 포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운영의 묘를 꾀할 수도 있다.

나. 적합인증번호 부여체계

적합인증을 받은 제품 등에 대한 인증번호 부여체계는 제외국의 추세를 반영한 (그림 3)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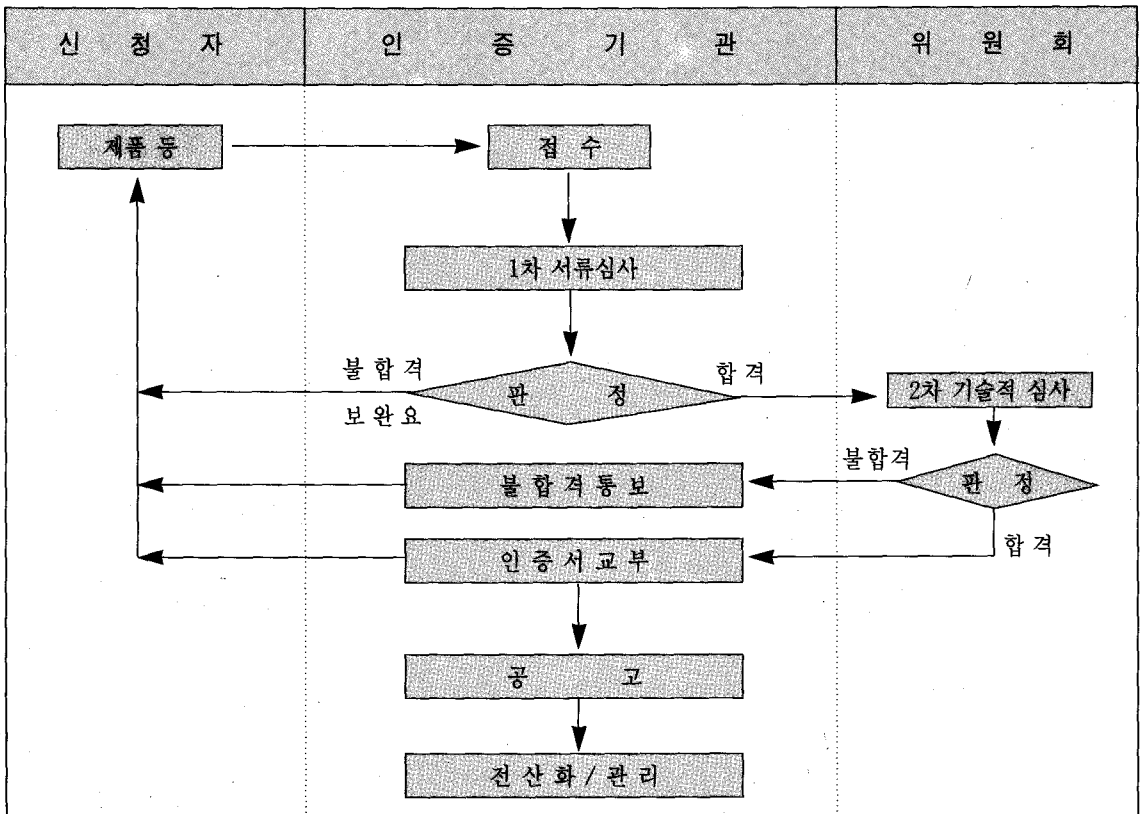


(그림 3) 적합인증번호 부여체계

(그림 3)에서의 KCS C는 Korean Communication Standard Certification을, N(1자리)은 원산지 표시를, XXXX(4자리)는 인증일련번호를, YY(2자리)는 인증부여년도를 각각 의미한다.

다. 적합인증절차

신청자에 의한 적합인증 신청부터 인증기관(한국통신기술협회)에 의한 인증서 교부까지의 적합인증절차는 (그림 4)와 같으며, 전체 소요되는 기간은 정상적인 경우 30일 이내로 설정하였다.



(그림 4) 적합인증절차

2. 적합인증 관련 각 기관별 역할 정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통신표준 적합인증 제도 정립을 위해서는 적합인증 관련 각 기관별 역할 정립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본 특별조사팀이 <표 2>와 같이 인정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신청자로 대별되는 각 기관별 역할을 정리하였다.

3. 일본의 적합인증제도 조사연구

본 특별조사팀이 세부운영규정(안) 작성을 위한 사전적인 연구로써, 미국이나 유럽보다 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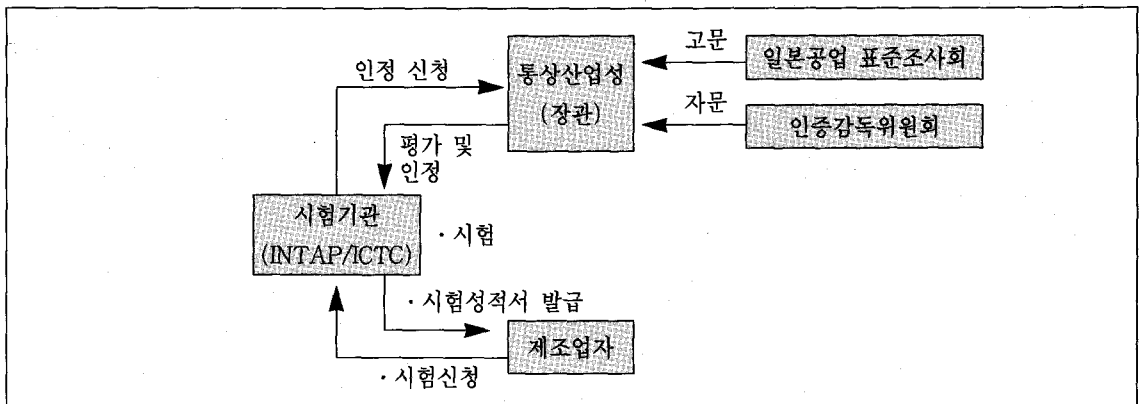
한 절차를 보유한 일본의 정보통신표준 적합인증제도를 조사분석하였다.

일본의 정보통신표준 적합인증제도(정책)는 정부인 통상산업성(MITI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에서 관장하에, 통상산업성 장관이 1991년 11월에 고시(제449호)한 "OSI와 관련한 적합성 시험기관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모든 적합인증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1992년 4월 OSI 제품에 대한 적합성 시험기관으로 인정(지정)된 정보처리 상호운용기술협회(INTAP : Interoperability Technology Associ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Japan) 산하의 상

<표 2> 적합인증 관련 각 기관별 역할

부 문 별 기 관	역	할	비고(국내)
인정기관 (Accreditation Body)	- 시험인증 업무에 대한 정책 결정기구 - 인증기관, 시험기관 지정 및 활동 감사		- 정부가 해당 (정보통신부)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 인증업무 수행(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등) - 인증 실적을 인정기관에 보고		- TTA가 해당
시험기관 (Test Laboratory)	- 신청자의 신청에 의한 제품의 적합성 시험 - 시험후 시험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		- ETRI/PEC, NCA 표준본부 가 해당
신청자 (Applicant)	- 제품 등을 제조하여 시험기관에게 시험 의뢰 - 시험성적서등 관련서류 첨부 후 인증기관에게 인증 신청		- 제품제조업체 가 해당

(그림 5) 일본의 정보통신표준 적합인증제도 운영체계



호운용성 및 적합성 시험센터인 ICTC(Interoperability and Conformance Test Center, 최근 명칭이 과거 INTAP Conformance Test Center에서 개칭됨)를 중심으로 (그림 5)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적합인증제도는 인정기관이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시험기관이 제품에 대한 시험을 한 후 합격한 제품은 곧바로 그것이 일반적인 인증조건이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조속히 INTAP을 인증기관으로 인정하여 투명한 규정정립을 통한 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위한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는 시험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상산업성의 고문기관이며, 인증감독위원회는 통상산업성의 자문기관으로서 세부적으로는 인증기관의 인정에 관한 심사기준 설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IV. 맺는말

본 특별조사팀의 활동으로 작성된 세부운영규정(안)은 기존 다른 분야의 인증제도(예, 형식승인제도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의 투명성(적합인증절차의 투명한 운영), 비차별성(국내제품과 외국제품간, 국내 신청자와 외국 신청자간의 차별성 배제) 및 공개성(신청자의 요구사항 자료 공개) 등 3대 원칙을 반영하여 제시되었다.

또한 한시적인 Task Force Team 형식으로 구

성된 본 특별조사팀의 활동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표준화규칙”의 제정(적합인증 관련 내용 포함) 작업과 맞물려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했으며, 이를 통한 국내 전기통신표준 적합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은 대내적으로는 이용자에게 보다 한 차원 높은 각종 서비스를 용이하게 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시장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의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세부운영규정(안)의 보완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TTA 시험인증연구위원회 및 산하 실무작업반, 그리고 각계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TTA, 시험인증제도 조사위원회,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기술기준 및 권고표준 시험인증제도 조사연구, 1994.12.
- [2] TTA, 시험인증제도실무반, 전기통신 권고표준에 관한 시험인증제도 연구, 1995.12.
- [3]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1995.6.
- [4] 한국전산원, 전산망 적합시험 인증체계 및 절차 연구, 1994.12.
- [5] INTAP, Guide to conformance test of OSI products by ICTC, 1995.10.